

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6. 9. 화 순 군 수
- 나. 회 부 일 자 : '96. 9.
- 다. 상 정 일 자 : '96. 9. 18(제47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- 가. 제 안 자 : 내무과장 이 병 일
- 나. 제 안 이 유
 - 화순읍의 택지개발과 아파트신축으로 인한 지역여건변화와 인구증가로 인한 일부 행정리의 분구와 청풍면 백운리의 인구감소 등 행정리 통합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이장 정원의 조정(안 제2조)
 - . 화순읍 교리 1명 → 2명(교리 → 교리 1, 2구)
 - . 화순읍 만연리 2명 → 3명(만연 2구 → 만연 2, 3구)
 - . 화순읍 일심리 3명 → 4명(일심 3구 → 일심 3, 4구)
 - . 화순읍 광덕리 3명 → 4명(광덕 1구 → 광덕 1, 4구)
 - . 청풍면 백운리 2명 → 1명(백운 1, 2구 → 백운리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김재휴)

- 동 조례개정안은 화순읍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여건 변화와 인구증가 및 청풍면 백운리의 인구감소로 인해 불합리한 행정리 조정에 따른 이장정원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.

4. 질의답변 요지

" 생 략 "

5. 토 론 요 지

“ 생 략 ”

6. 심 사 결 과

「원 안 가 결」

7. 첨 부 :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6. 9.

제출자 : 화순군수

1. 제안이유

화순읍의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지역여건 변화와 인구증가로 인한 일부 행정리의 분구와 청풍면의 인구 감소로 행정리 통합

2.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
- 화순군반설치조례

3. 주요 골자

(화순읍)

- 화순읍 교리 → 교리 1, 2구 분구
- 화순읍 만연리 → 만연 3구 신설
- 화순읍 일심리 → 일심 4구 신설
- 화순읍 광덕 1구 → 광덕 1, 4구 분구

(청풍면)

- 청풍면 백운 1, 2구 → 백운리로 통합

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화순읍 교리, 만연리, 일심리, 광덕리와 청풍면 백운리 "이장정원"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읍 면 명	리 명	정 원	비 고
화 순 읍	교 리	2	
	만 연 리	3	
	일 심 리	4	
	광 덕 리	4	
청 풍 면	백 운 리	1	
합 계	347	350	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			개정			
읍면별	이명	정원	비고	읍면별	이명	정원	비고
화순읍	교리	1		화순읍	교리	2	
"	만연리	2		"	만연리	3	
"	일심리	3		"	일심리	4	
"	광덕리	3		"	광덕리	4	
청풍면	백운리	2		청풍면	백운리	1	
합계		347		합계		350	